

2020학년도 수시모집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모집 요강



국립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지원자 유의사항

1. 입학전형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우리 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www.gntech.ac.kr)를 통해 공지합니다.
2. 외국어로 된 서류는 한글 번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서류는 공증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원서 제출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우리 대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우편 접수 불가)
4. 지원자는 하나의 모집 단위에만 지원하여야 합니다.
5.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때에는 원본을 제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6. 모집요강에 명시한 구비서류를 모두 갖추어 지원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만으로 사실 확인이 어려울 때에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입학허가 후에도 지원 자격에 결격 사유가 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람은 합격 또는 입학허가를 취소합니다.
8. 입학전형은 수시모집(2020학년도 3월 입학)에 해당하므로 수시모집에서는 6개 전형(재외국민과 외국인전형을 포함한 모든 전형)까지만 복수지원이 가능하며(단,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제외)수시모집 합격자는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이 불가합니다.
9. 지원대상자는 재외국민과 외국인 지원자격을 심사 받은 후 통과자에 한하여 원서를 제출합니다.
10. 합격자는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하여 지정 은행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11. 전형 자료는 공개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12.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대학교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릅니다.

※ 외국에서 발급받은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 아포스티유협약 가입국 소재 학교에서 발급한 증명서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것
- ▶ 아포스티유협약 미 가입국 소재 학교에서 발급한 증명서는 한국영사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
- ▶ 제출서류가 한국어 또는 영어가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어 번역본을 함께 제출할 것
- ▶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류는 제출일 기준 30일 이내에 출력한 서류만 인정

목

차

1. 전형 일정	4
2.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5
3. 지원 대상 및 자격요건	6
가. 입학정원의 2%이내 재외국민과 외국인	6
나. 입학정원 제한 없는 재외국민과 외국인	7
1) 전 교육과정 이수자	7
다. 부모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7
라. 북한이탈주민.....	7
4. 지원 자격 심사 기준 및 해설	8
5. 제출서류	9
6. 전형 방법	10
가. 전형요소	10
나. 전형방법	10
다. 선발방법	10
7. 전형료	10
서식1. 입학지원서	11
서식2. 자기소개서	12
서식3. 수학계획서	13

1

전형일정

구 분	기 간	장 소	비 고
원서접수	2019.7.1.(월) ~ 7.3.(수) 18:00	입학교무과	방문접수
서류제출	2019.7.1.(월) ~ 7.5.(금) 18:00	입학교무과	
서류전형	2019.7.19.(금)	학과 지정장소	
합격자 발표	2019.7.26.(금) 15:00(예정)	학교 홈페이지	※ 개별 통지 하지 않음
등록예치금 납부	2019.12.11.(수) ~ 12.13.(금)	학교 지정수납처	본교 홈페이지에서 고지서 출력 후 납부
최종(잔여) 등록금납부	2020. 2. 5.(수) ~ 2. 7.(금)	학교 지정수납처	

※ 일정은 학교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는 개별 통지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2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전형구분	모집단위(모집인원)	비고
입학정원의 2%이내 재외국민과 외국인	농학전공(1), 동물생명과학과(1), 원예과학과(1), 식품생명공학전공(1), 영양학전공(1), 제약공학과(1), 토목공학과(1), 조경학과(1), 환경공학과(1), 건축공학과(1), 건축학과(1), 기계공학부(1), 컴퓨터공학부(1), 전자공학과(1), 메카트로닉스·전기공학부(1), 자동차공학과(1), 에너지공학과(1), 아동가족학과(1), 사회복지학과(1), 경영학과(1), 유통학과(1), 글로벌무역통상학과(1)	총 22명 (주간 22명)
입학정원 제한 없는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 교육과정 이수자)	농학전공, 한약자원전공, 동물생명과학과, 산림자원학과, <u>산림자원학과(야간)</u> , 원예과학과, 식품생명공학전공, 영양학전공, 동물소재공학과, 제약공학과, 토목공학과, 조경학과, 환경공학과, 인테리어재료공학과, 건축공학과, 건축학과(5년제), 기계공학부, 컴퓨터소프트웨어전공, 데이터사이언스전공, 전자공학과, 메카트로닉스·전기공학부, 자동차공학과, 에너지공학과, 아동가족학과, 사회복지학과, 영어학과, 경제학과, 회계학과, 경영학과, 유통학과, 글로벌무역통상학과	입학정원 제한 없음
북한이탈주민	농학전공, 한약자원전공, 동물생명과학과, 산림자원학과, <u>산림자원학과(야간)</u> , 원예과학과, 식품생명공학전공, 영양학전공, 동물소재공학과, 제약공학과, 토목공학과, 조경학과, 환경공학과, 인테리어재료공학과, 건축공학과, 건축학과(5년제), 기계공학부, 컴퓨터소프트웨어전공, 데이터사이언스전공, 전자공학과, 메카트로닉스·전기공학부, 자동차공학과, 에너지공학과, 아동가족학과, 사회복지학과, 영어학과, 경제학과, 회계학과, 경영학과, 유통학과, 글로벌무역통상학과	입학정원 제한 없음

※ 밑줄 친 모집단위는 야간 모집 단위임.

3

지원 대상 및 자격요건

가. 입학정원의 2%이내 재외국민과 외국인

< 기본 학력요건 >

국내·외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한(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소지한자

1. 외국소재 고교 졸업자
2. 외국소재 고교에서 국내 고교로 전학하여 국내 고교를 졸업한 자

구분	세부구분	일반적 자격 기준	최저 해외 재학·거주·체류 기간							
			학 생			보호자				
			재학	거주	체류	거주	체류	배우자		
재외 국민	영주 교포자녀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2년 이상 영주하는 교포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포함한 중·고교 과정을 연속으로 2년(4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해외근무 공무원의 자녀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공무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포함한 중·고교 과정을 연속으로 2년(4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해외근무 상사직원의 자녀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해외상사 직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포함한 중·고교 과정을 연속으로 2년(4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의 자녀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포함한 중·고교 과정을 연속으로 2년(4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유치 과학자및 교수요원 자녀	정부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포함한 중·고교 과정을 연속으로 2년(4학기)이상 재학하고 귀국한자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기타 재외국민	기타 적법한 사유(절차)로 외국에 거주(근무)하는 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포함한 중·고교 과정을 연속으로 2년(4학기)이상 재학하고 귀국한자 ※부모의 해외거주 사유(예): 자영업, 현지회사 근무, 해외 선교활동, 해외 파견 교직원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외국인	외국인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외국에서 고교과정을 2년 이상 수료한 외국인(복수국적자 제외)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2년	2년	2년					

나. 입학정원 제한 없는 재외국민과 외국인

1) 전 교육과정 이수자

< 기본 학력요건 >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12년)을 전부 이수한자
단, 2개국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 과정을 이수한자가 제3국의 학교에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해당국 간의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1개 학기(6개월)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 12년 미만의 학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초·중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자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함.(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9호)

구 분	지원 자격	최저 해외 재학·거주·체류 기간							
		학 생			보호자			배우자	
		재학	거주	체류	근무	거주	체류	거주	체류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 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12년	12년	12년					
전 교육과정 이수 외국인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 과정을 전부 이수한 외국인 -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12년	12년	12년					

다.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구 분	지원 자격	최저 해외 재학·거주·체류 기간							
		학 생			보호자			배우자	
		재학	거주	체류	근무	거주	체류	거주	체류
부모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순수 외국인) -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	-	-	-	-	-	-	-

라. 북한이탈주민

구 분	지원 자격	최저 해외 재학·거주·체류 기간							
		학 생			보호자			배우자	
		재학	거주	체류	근무	거주	체류	거주	체류
북한이탈주민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의해 교육감이 학력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 육과정 수료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	해당 시·군·구청 및 교육청 확인			-	-	-	-	-

4

지원 자격 심사 기준 및 해설

구 분	주 요 해 설
외국학교 소재지 인정기준	① 부모의 근무(파견)국 내에 소재한 학교에서 재학한 경우만 인정 (다만, 제3국 소재 학교 재학은 부모 근무국의 지역·종교·공산권(이데올로기) 등의 특성상 부득이 하다고 재외공관장이 인정한 경우, 대학의 심사과정을 거쳐 예외적으로 인정) ②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재학기간 인정기준	① 수업결손 없이 2개 학기를 이수한 경우 1년을 재학기간으로 인정 ②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 이란 외국의 고등학교과정(2년 전체)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포함하여 계속 재학한 2년 이상 기간 ③ 출·입국이 빈번하여 2년 이상 연속으로 재학하지 아니한 경우는 고등학교 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통산 3년 이상의 중등학교 과정에 재학한 경우는 2년 이상 재학한 것으로 인정 ④ 재학기간은 해당국의 학제 등을 고려하여 연도가 아닌 학기 기준으로도 해석 (예: 중·고과정 연속 3년 이상→해당 국가가 2학기제인 경우 중·고과정 연속 6학기 이상, 3학기제 또는 쿼터제인 경우 중·고과정 연속 9학기 또는 12학기 이상 등) <전 교육과정 이수자> ⑤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12년)을 전부 외국에서 이수하여야 함. ⑥ 2개국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자가 제3국의 학교에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해당국간의 학제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1학기(6개월) 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⑦ 12년 미만의 학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초·중·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함(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제1항제9호)
부모의 거주기간 체류기간 영주기간 근무기간	역년(Calendar)과 학년(Academic Year)을 기준으로 하며, 부모의 거주(영주) 및 체류기간은 학생의 재학기간과 중첩된 기간만을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거주기간: 재학 및 근무를 위해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으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상의 기간 • 해외체류기간: 출입국증명서상 해당국의 거주기간에서 국내체류일수를 제외한 기간 • 해외영주기간: 영주권을 발급받은 후 해외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 • 해외근무기간: 증명서상(재학 및 경력증명서) 해외근무발령일부터 귀임명령일까지의 기간
해외파견 근무자의 자격 인정 범 위	① 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② 상사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 •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설치인증·허가되지 않았거나 또는 설치인증·허가기간이 지난 해외지점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외국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환은행(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 정부파견 의사, 언론기관 특파원 ③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정부 : 해당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 기관 (단,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국영기업체는 제외) • 국제기구: 정부 간의 국제조약·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 (다만, 기타 비정부 간 또는 국제단체 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는 제외) ◎ 해외 근무자의 근무형식 외국에 상근하는 경우에 국한(교육, 연수, 출장 형식의 단기 근무자는 제외)
외국인 인정기준	기준 시점 : 원서접수 개시일(2019.7.1.) ①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② 복수국적자, 무국적자 제외

5

제출서류

번호	구분	영주교포자녀	해외근무공무원자녀	해외근무상사직원자녀	외국정부또는국제기구근무자녀	유치과학자및교수요원자녀	자영업자자녀	현회회사근무자녀	선교사자녀	해외파견교직원자녀	외국국적취득외국인	전교육과정 이수 외국인	전교육과정이수 외국인	부모모두외국인인외국인	북한이탈주민	비고
1	입학원서	○	○	○	○	○	○	○	○	○	○	○	○	○	○	직접 방문 접수
2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	○	○	○	○	○	○	○	○	○	○	○	○	예정증명서를 제출한자는 추후 졸업증명서 제출
3	초, 중, 고등학교 재학 및 성적증명서	○	○	○	○	○	○	○	○	○	○	○	○	○	○	
4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전가족 호적등본	○	○	○	○	○	○	○	○	○	○	○	○	○	○	
5	출입국사실 증명서(부, 모, 학생)	○	○	○	○	○	○	○	○	○	○ (학생)	○ (학생)	○ (학생)	○ (학생)	○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 발행
6	영주권 사본(부, 모, 학생)	○														해외공관장 확인
7	재외국민등록필증(보호자, 학생)	○	○	○	○	○	○	○	○		○ (학생)					
8	보호자의 재직(경력)증명서		○	○	○	○	○	○	○							본사 인사권자 발행
9	제3국 수학인정서		○	○	○	○	○	○	○							해당자에 한함
10	해외지사설치인증허가서 또는 해외직접투자승인서(허가서)			○												국내은행권에서 발행
11	법인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								
12	세금납입영수증						○									
13	해당 종교단체장 추천서								○							
14	해당 기관장 초청서 또는 추천서				○					○						
15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표										○	○	○	○		국립국제교육원 발행
16	국적상실 확인 증명서 (학생: 기본증명서)									○						
17	외국국적증명서 (학생: 시민권사본, 여권사본 등)									○		○	○			
18	외국인 등록증(소지자에 한함)									○		○	○			
19	재정보증인의 미화 \$18,000이상 예금 잔고 증명서 또는 국내송금환전증명서									○		○	○			원서접수 시작일 기준 1개월 이상 계속 예치
20	재정보증인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		○	○			
21	재정보증인의 재산세 과세증명서 또는 수입증명서									○		○	○			
22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통일부 및 시군구청 발행
23	고등학교 학력증명서													○		해당 교육청 발행
24	수학계획서 등	○	○	○	○	○	○	○	○	○	○	○	○	○	○	서류전형

6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

모집정원	전형구분	전형요소	비 고
입학정원 2% 이내	재외국민과 외국인	서류심사 100%	서류심사 (수학계획서 등)
입학정원 제한 없음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과 외국인	서류심사 100%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서류심사 100%	
	북한이탈주민	서류심사 100%	

나. 전형방법

모집정원	구 분	지원 대상	전형방법
입학정원 2% 이내	재외국민	영주교포의 자녀	서류심사 (수학계획서 등)
		해외근무자의 자녀 (공무원, 상사직원,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근무자)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외국인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	
입학정원 제한 없음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과 외국인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다. 선발방법

- 모든 전형에서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수 제한이 있는 전형 (입학정원 2% 이내의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서류심사의 성적 순위 대로 선발함
- 본교가 정하는 기준점수 미달자, 지원자격을 위반한 지원자, 서류제출 미비자는 불합격 처리함(적격자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음)

7

전형료

○ 전형료 : 19,000원

<서식2>

자 기 소 개 서

수험번호				
지원 모집단위		학부, 학과		
성명		한글:	한자:	
		영문:		
출신 고등학교 및 졸업년도		년 월 일	고등학교(졸업예정·졸업)	
최종 해외 수학국		국가:	도시:	
주요 자격증		1.	2.	3.
주요 수상실적				
취미		특기		
2019년 월 일 본인 _____ (인)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총장 귀하				

- ▶ 관련 서류를 A4 규격에 맞추어 정리
- ▶ 관련 서류를 사본으로 첨부할 경우는 합격한 후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자격증 및 수상실적이 3개 항목을 초과할 경우 중요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 ▶ 난이 부족할 경우 추가로 별지에 작성가능

<서식3>

수학계획서(Study Plan)

※ 한국어로 타자를 치거나 깨끗이 쓸 것(Please Type or WRITE clearly in korean)

성명(name)	
국적(Nationality)	
한국어 능력 (Korean proficiency)	• 우수(Excellent) __ 좋음(Good) __ 괜찮음(Fair) __ 부족(Poor) __ • 한국어능력시험(TOPIK) Level: _____ Total Score: ____ / ____
지원학과 (Intended Major)	

지원동기(Purpose of Application)

학업 계획(Study Plans)

졸업 후 진로 계획(Future Plans after Graduation)